

한국노총 상반기 임단투 평가와 전망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한국노총은 금년도

노사관계 역시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공세가 만만치 않고,

지불능력의 악화를 이유로

사용자측의 교섭 해태와 거부가

빈발하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임단투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개각이 있기 전 전임 이 기호 노동부 장관은 5월 15일 부로 금년도 임단투는 사실상 끝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고위 관료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금년도 임단투에 대한 인식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 노사관계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파괴력과 영향력이 큰 민주 노총 산하 대형 사업장의 임단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지적이 일면 현실적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한국노총을 비롯한 대부분 사업장의 본격적인 임단투가 6월 중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과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과 저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안일한 시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노총은 금년도 노사관계 역시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공세가 만만치 않고, 지불능력의 악화를 이유로 사용자측의 교섭 해태와 거부가 빈발하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임단투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6월 중에 총력

투쟁을 배치하였으며, 이런 가운데 노사 정위 탈퇴 이유로 제기했던 노정간 6대 정책 요구에 대한 협상이 공공부문 구조 조정 등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지지부진 하자 6월 16일 시한부 총파업과 6월 26일 전면 총파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2. 금년도 임단협 투쟁의 배경과 정세인식

일찍이 금년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금년도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우선 경제적으로 볼 때, 지난 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보상심리와 기대심리를 자극 한다. 지난 해에 85%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동결 또는 삭감 등의 양보교섭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정치적으로 내년도 총선 및 내각제 논의 등 정치 일정 등과 관련된 정치일정의 불투명성, 김대중 정부의 참신성과 개혁에 대한 국민과 노동계의 기대감 하락 역시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사회적으로도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그들의 생계수단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으며, 더구나 신학기 개학 및 임단투와 더불어 활동력과 투쟁력이 뛰어난 신규

학졸 실업자들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그렇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투쟁 분위기를 부추기거나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들이다. 노사관계 요인으로는 노사간의 갈등과 쟁점을 조정하고 조율할 정책 참가 기구로서 노사정 위원회의 기능 마비, 게다가 지난 해에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및 노동조합 무력화 등 각종 양보교섭과 노동통제에 맛을 들인 사용자측의 불법행위 벤밸과 연봉제 도입 기도 등 새로운 노동통제 기도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 여기다가 양대 노총의 위원장 선거는 물론 산하 사업장의 다수가 금년 중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노동계의 투쟁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끝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볼 때도, IMF 경제위기로 인한 긴장감이 1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과 정치권 및 재벌 개혁 등 경제위기의 주범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등이 고통의 전담자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박탈감과 불신감을 고조시켜 투쟁을 추동 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결집시켜 나갈 때, 고삐풀린 듯이 진행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신봉되는 김 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방침을 견제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 99년도 임단투의 전략과 쟁점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금년도 임단투 목표 및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확정하였는데 그것은 '더 이상 양보교섭은 없으며,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98년도 양보교섭 원상 회복 및 생존권

수호 원칙에 따라 임금 수준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5.5% (정액 57,370원) 인상시키고,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확보를 금년도 임단투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 전략으로는 양보교섭사 상급 단체와 반드시 사전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였으며, 공동교섭과 교섭권 위임의 원칙 및 상급조직의 정책제도 개선 투쟁과 단위 사업장의 임단투를 연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임단투를 통해 양보교섭을 원상 회복하여 생존권 사수와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조직적으로는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및 산별 노조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투쟁일정으로는 4월 중에 공동교섭 대책위를 발족하고, 집중 교섭을 통해 5월 중 쟁의질차에 돌입하며, 6월 중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는 것으

한국노총은 금년도 임단투 목표 및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확정하였는데 그것은 더 이상 양보교섭은 없으며,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로는 무엇보다도 노동계의 5.5% 임금인상 요구와 맞물린 양보교섭 여부, 일방적 구조조정과 관련된 고용안정 보장 및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제고 문제, 연봉체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분사화 등 신경영 전략에의 대응,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문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싼 문제, 노동조합의 산별 전환 및 노동조합 통합 문제 그리고 교원 노조 결성 등이 바로 금년도 노사관계를 둘러싼 주요 쟁점 및 변수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4. 상반기 임단투의 경과 및 성과와 한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된 임단협 투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5월 25일 현재 한국노총 산하 24개 학원조직 산하 3,470개 단위노조의 요구 수준을 살펴 보면, 14개 산별이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며, 동결 산별은 3개 학원 조직에 12개 단위노조, 미확정 산별은 6개 산별에 183개 단위노조로 나타났으며, 전국택시노련 산하 693개 노조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요구하고 있다. 산별단위에서 요구안을 제시한 경우 항

운노련을 제외하고 평균 5.22%를 제기 하여 대체로 한국노총의 임금 요구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99년도 임단투 진도율은 8.35%로 보고되었는데, 교섭권 위임 상황은 금융노련 산하 9개 시중은행이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5월 7일 1차 공동교섭 실무회의 이후, 5월 19일 2차 교섭이 결렬된 바 있고, 제조업 산별 산하 사업장들에서 교섭권을 위임하고 있다.

임단투와 관련하여 생의발생 조직으로는 자동차 노련 대전지부가 4월 1일 총파업을 단행하여 총액대비 4.57%의 임금 인상을 쟁취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 노총 산하 조직중 5월 25일 현재 290개 노조가 타결되었는데, 동결노조로는 철도, 체신, 전력이 있으며, 자동차노련이 3.3%, 화학노련이 4.87%, 금속노련이 4.97%, 섬유노련이 3.6%의 임금인상을 보이고 있어, 지난 해와는 달리 상급 단체의 지침처럼 양보교섭 또는 일방적 임금삭감과 동결등의 사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판단은 지난 4월 30일 현재 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5,097개소(98년 5,476개소)를 과악한 결과 전체의 18.6%(전년동기 18.6%)가 타결되어 총액기준 0.0%(전년 동기 마이너스 1.5%), 통상임금 기준 0.7%(전년 동기 마이너스 0.1%)의 임금타결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데 여전히 공동교섭이나 교섭권 위임 및 상급조직의 정책투쟁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급 조직의 목적 의식적 임단투 추진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와 IMF 경제위기가 초래한 노동운동의 위축의 여파가 아직도 의연히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대량실업과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한국사회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양대 노총간의 목적 의식적 노력과 개별 사업장에의 적용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연봉제 등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 등 구조조정 방침과 노동통제에 대한 대응 역시 총체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투쟁을 위해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갈 사안중의 하나이다.

이런 속에서 한국노총의 임단투 지원 및 정책제도 개선 투쟁과 조직적·대중적 투쟁의 결합은 2월 26일 대의원 대회 및 4월 9일 중앙위원회 결의로 이어지는 노사정위원회 6대 정책요구 제기와 조건부 탈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연맹, 전력 노조, 금융노련, 정부산하기관 노동조합 등 연인원 10만명 가량이 참가한 대중집회를 통해 관철된다. 이른바 '개혁의 제도화'로 일컬어지는 한국노총 중앙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 탈퇴'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을 하였다. 이것은 정책연합

이후 이어졌던 한국노총과 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정책연합의 파기 등 관계 재설정은 물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정치적·조직적 저항과 투쟁까지를 포함하는 일대 사건으로서 한국노총이 민주 노총과의 관계를 '전략적 연대와 전술적 경쟁'으로 설정하고 현장 대중들의 투

쟁 동력을 최대한 조직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양대 노총 내부의 조직적 사정과 맞물린 정책 및 투쟁방침의 조율 미흡으로 인해 지하철 파업이 시작된 4월 19일 노사정 대표가 회동하여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방침 합의와 지하철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자체 요구 등을 하였는 바, 이것은 그 자체가 가지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양대 노총의 연대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한국노총은 산하 전조직의 임단협 투쟁 지원 그리고 정책제도 개선 투쟁과 임단투의 결합에 있어서 노정협상을 통해 6대 정책 요구를 제기하였는 바, 그 내용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실질적 사전 합의 보장,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철폐와 자율적 노사관계 보장, 실질적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 산업현장

■ ■ ■ ■ ■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대중집회 및 현장의 임단협 투쟁과의 연계를 통해 관철코자 하였으나, 좀더 적극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현장 투쟁과의 연계를 갖도록 추진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의 불법행위 근절과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의 이행과 노사정위원회법 제정을 통한 위상 강화인데, 그 결과, 다소 미흡하긴 해도,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이 2~3조 원 가량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난 5월 3일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5. 6대 정책요구와 노정협상

먼저 강조할 것은 무엇보다도 6대 정책 요구가 현 시기 한국의 노동자와 노동운동 특히 한국노총 조직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압축 요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대중집회 및 현장의 임단협 투쟁과의 연계를 통해 관철코자 하였으나, 좀더 적극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현장 투쟁과의 연계를 갖도록 추진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9일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최종 협상 결과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고, 앞으로 6월 16일 및 6월 26일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그 내용이 더욱 보완될 것으로서 아직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 주요 내용과 노정협상 결과의 골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실질적 사전 합의 보장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및 구체적 추진 방식에 대해 노사가 충분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때까지 기획예산위와 금감위의 기존 지침(예산편성 지침 등) 시행을 유보' 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공기업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및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단체협약 개선, 취업규칙 변경 등 필요한 적법절차 이행을 위해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및 교섭토록 하며, 특히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불응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법처리, 인사 조치 등 염중 조처' 하며, '노사정위원회법(안)에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의 기능(사전 협의 및 정책방향 수립,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협조 의무 등)을 명기' 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개별 사업장의 구조조정과 관련 노사간 사전에 충분하고 성실하게 협의되도록' 요구하였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 정부는 1999년 상반기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 제 81조 4항, 제 90조, 부칙 제 6조를 개정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고, 실질적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① 기업의 구조조정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차등적 고용보험요율제를 99년도 종료일 하고 ② 노사정위원회에 (기칭) "근로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4월중에 설치하여 주 40시간 노동제등 법정근로시간 단축·휴일휴가 제도를 99년 중에 개선 하며 ③ 고용안정 협약의 작성과 이에 대한 개별 사업장 지원책 강구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⑤ 실업부조제도 등 사회안전망 보강, ⑥ 노동조합의 참여에 기초한 실업대책 수립과 노사단체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⑦ 실업대책 예산 10조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업단과 구속수사 원칙 확립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개정 등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과 관련하여, ① 근참법 개정 ② 우리사주제도 개선 ③ 종업원주주제(ESOP) 도입시 노사정합의 및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 ④ 성과배분제 도입시 지원 ⑤ 연봉제 도입시 노사간 사전 합의 등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노사정위원회 협의 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기입 법제화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노사정위원회법의 제정을 촉구했는데, 수차의 교섭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된 내용과 정부의 최종입장은 다음과 같다.

6. 향후 전망과 과제

노총수정요구안	정부안
I.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실질적 사전협의 보장	구조조정 관련
<p>1-1. 정부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노·사가 충분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때까지 기획예산위와 금감위의 기준 지침(예산편성지침등)시행을 유보한다.</p> <p>1-2. 정부는 공기업 및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및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단체협약갱신, 취업규칙변경 등 필요한 적법절차 이행을 위해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및 교섭하며, 특히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 감독하고, 지도 불응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인사조치 등 엄중 조처한다.</p> <p>1-3.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법(안)에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의기능(사전 협의 및 정책방향 수립,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협조업무 등)을 명시한다</p> <p>1-4.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개별사업장의 구조조정과 관련 노사간 사전에 충분하고 성실하게 협의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p>	<p>(1-2) 방향에 대해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성실하게 사전 협의한다.</p> <p>(1-1) 정부는 기획예산위 및 금융감독위의 지침을 통해 공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 지도 감독한다. <p>· 사제</p>
II.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조항 삭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관련
<p>2-1. 정부는 1999년 상반기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81조 4항, 제90조, 부칙 제6조를 개정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에 달긴다.</p>	<p>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관련, 노·사·정·공의 으로 구성된 (가칭) "노조전임자제도개선위원회"를 4월중에 설치하여 하반기 안에 노사관계의 기본원칙,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 및 국제적인 노동관례를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99년말까지 관련법률을 개정한다.</p> <p>* 경총의견 : 정부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관계의 기본원칙,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 및 국제관행 등을 감안,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그 합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p>
III. 실질적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관련
3-1.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 99년도중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p>위해 차동적 고용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99년 상반기중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99년도중 관련법안을 마련한다. 99년도중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충분한 검토 필요)</p>	<p><u>토대로(충분한 검토 필요)</u></p>
<p>3-2. 정부는 (가칭)"근로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4월 중에 설치하여 주40시간 노동제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휴일휴가제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반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99년도중 관련법안을 마련한다.</p>	<p>삭제 경총의견 : 99년도중 삭제</p>
<p>3-3.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협약 형식의 고용안정모델에 합의하고, 이러한 취지가 개별 사업장에서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p>	<p><u>고용안정모델이 합의되도록 적극 지원하고</u> <u>삭제</u></p>
<p>3-4. 정부는 경제위기와 고실업의 여건下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에 대한 기초적 생활보장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관련법 제정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마련한다.</p>	<p>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또는 관계법률의 개정 등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마련한다. ※ 법 제정에 대하여 복지부 유보, 예산청 반대</p>
<p>3-5. 정부는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도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는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실업부조제도 등 사회안전망 보강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p>	<p>삭제</p>
<p>3-6. 정부는 각종 실업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노사단체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p>	<p><u>노·사단체와</u> <u>실업대책 사업에</u></p>
<p>3-7.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 증액된 실업재원의 용도와 관련하여 노동계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한다.</p>	<p>삭제(기수용)</p>
<p>IV.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p>	<p>불법행위 근절 및 단체협약 관련</p>
<p>4-1. 정부는 산업현장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및 산업안전법 위반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엄단한다</p>	<p>※ 경총의견 : 폭력행위 등 노사의</p>

<p>4-2. 정부는 노동계가 법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조사하여 신속히 의법 조치하되, 고질적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는 정황만으로도 구속 수사토록 한다.</p>	<p>· 의법조치한다.</p>
<p>4-3. 정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동부의 특별 정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 세무조사 등 정부 관계기관 합동 단속, 금융상의 제재 등 제반대책을 강구한다.</p>	<p>· 삭제</p>
<p>4-4. 정부는 1999년도 상반기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등을 개정하여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p>	<p>· 4-3.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단체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1999년말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한다.</p>
<p>V.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p>	<p>근로자의 경영참여 관련</p>
<p>5-1. 정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보고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되, 회사의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추진도록 한다.</p>	<p>* 경총의견 : 정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보고사항의 개선·보완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추진토록 한다.</p>
<p>5-2.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의무보유기간 단축,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지원,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민주성·지주성 보장 등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p>	<p>· 삭제</p>
<p>5-3. ESOP제도는 노사정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사정 합의로 도입을 추진한다.</p>	<p>· ESOP제도의 도입시 노사정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p>
<p>5-4. 정부는 성과배분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되,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여 추진한다.</p>	
<p>5-5. 정부는 연봉제 등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변경시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동자 대표의 동의 등 현행 법절차가 준수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p>	

VII.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및 위상강화 제도화

- 6-1.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전직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 6-2.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를 허용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도록 한다.
- 6-3.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사정 위원회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포함한다.)
- 6-4.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별첨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및 위상강화 관련

- 제출토록 한다.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가 국회의 정치개혁일법 추진일정에 포함되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출되도록 한다.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이 끝나자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노정간의 대화와 협상이 단절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대표자회의는 6월 16일과 6월 26일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정책이 노동배제적이며,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노총이 총력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총력투쟁을 위한 밑그림으로는 지난 번 YS 정권 때, 날치기 노동법을 총파업을 통해 저지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선에서 심판하겠다고 했던 그림과 유사하다. 즉, 일방적 구조조정 정

책으로 인해 공무원인 체신노조까지도 5월 30일 대규모 여의도 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업인 정투연맹, 담배인삼 노조, 전력 노조 등과 금융노련, 제조업 산별 등 대중들의 투쟁열기가 증대하고 있으며, 전국적 대중집회를 통해 총파업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 6월 1일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6월 16일과 26일에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하반기 이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개선 국민운동의 전개, 금융노련의 IMF 손배 청구소송, 금융실명제 등 세계개혁과 재벌개혁 등에 대해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국민운동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전개와 결합하여 현정권을 압박한 이후, 내년도 총선에서 심판하

겠다는 것이 그 골격이다.

이 글에서 현재 임단투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임단투의 배경과 경과 및 성과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보았고, 한국노총의 경우 오히려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6월 이후 투

쟁을 조망해 보았다. 그 투

쟁의 경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커다란 이변이 없는 한, 크게 보아서 한 국노총의 6월 총파업을 분기점으로 해서 금년도 임단투가 일단락되면서 노사정위 원회의 재구성과 노정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대체적인 관측이 일치되고 있다. 임단투의 일단락과 지하철 파업 이후 민주노총의 조직적 수습 그리고 노사 정위원회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정비 및 위원 위촉 등의 일련의 절차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가능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조 간부에 대한 대량 구속과 수배를 푸는 것이며, 하루 빨리

국민적 지지 속에서 고용안정 쟁취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전략적 과제인 산별노조 건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화 및 노동운동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야한다.

노정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사간 사전 협의와 교섭을 통해 사회통합적·노조참여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아울러, 우리 노동운동도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바람하지 않든 좋은 객관적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의 주

체적 역량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획기적 발상 전환을 통해 우리는 국민적 지지 속에서 고용안정 쟁취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전략적 과제인 산별노조 건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및 노동운동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양대 노총은 항상 '전략적 연대와 전술적 경쟁'이라는 원칙 아래 유기적인 투쟁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